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,
- 부서별 분산 운영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도모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가. 1,639명 → 1,642명(+3명)
 - 집행기관 : 1,611명 → 1,614명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별표 3)
 - 가. 정원 총계 : 1,639명 → 1,642명(+3명)
 - 나. 일반직 계 : 1,600명 → 1,603명(+3명)
 - 다. 6급이하 계 : 1,500명 → 1,503명(+3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 -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: 691,142천원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라 감염병 대응인력을 증원하여 감염병 관리기능 강화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,
- 부서별 분산 운영중인 CCTV 통합관리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여 범죄예방 기능강화로 시민생활 안전확보를 도모코자 조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